

제7차 농어업·농어촌특별위원회 결과 보고

1. 개요

- ☐ 일시·방식 : 2020.12.21.(월) ~12.23.(수) / 서면회의
- ☐ 참석 인원 : 27명
 - (위원장) 정현찬 농특위 위원장
 - (당연직 위원) 5명 중 5명 참석
 - (위촉직 위원) 24명 중 21명 참석 * 불참 : 김홍길·강선아·이시재 위원

2. 회의 결과

- ☐ (심의안건) 농산어촌 발전의 신 주체로서 청년층 지원 및 육성 방안(안) : 원안 의결 (可 26명, 否 없음, 기권 1명)
 - (내용) 지역청년 주도 통합적 계획 수립 및 일자리 지원, 청년 육성 교육기관 설립 및 교육기회 제공, 지역청년 공동체 및 교류 활성화, 농산어촌 청년 지원·육성 추진체계 구축 등 심의·의결
 - 주요 의견
 - 농산어촌 청년층의 유입·정착·성장 등 단계별 지원과정에서 부적응하거나 실패해도 재기할 수 있는 ‘재도약 안전망 구축 전략’ 추가 필요
 - 향후 수산업 분야까지 청년 일자리 사업 및 지역 교류 활성화 사업 등 지원·확대 필요
 - 지역 청년 공동체 및 교류 활성화 과제에서 지역 청년단체나 마을 청년회에 청년 여성이 포함되도록 하되, 부녀회 또는 여성단체와 연계한 멘토링 제도가 활성화되도록 구체적 계획 마련 필요
 - 사회적 손실 비용 발생 가능성을 감안, 농수산 대학·지역 대학교와 연계하여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 후 별도의 ‘청년 육성 교육기관’ 설립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효율적

- 청년의 농촌 정착을 위해 결혼 이후의 출산·산후대책과 자녀의 교육여건 충족 등 정주여건 조성 관련 제도 보완 필요
- 청년정책 주관부서가 없어 부처 간 소통 노력이 필요하며, 청년농업인 이외에 농촌지역의 청년에 대한 소관 정책을 누가 주도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 마련 필요
- 농어업 분야에서 청년층의 관심이 높은 2차 산업 및 3차 산업 위주로 취업 및 창업 프로그램 편성 필요
- 청년창업 관련 교육센터의 건립 또는 대학 연계 학부 개설 등은 예상 수요에 맞춘 인력 창출이 가능하도록 중앙센터의 기능이 중요
- 농업일자리, 농촌일자리를 구분하고 도시근교형, 원격 농촌·산촌·어촌형 일자리 등 유형별 차별화된 일자리 발굴 필요
- 청년층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도록 영농 법인단체 설립을 지양하고, 운영비를 축소하는 등의 방안 필요
-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제안된 사업에 대한 필요성 및 효과, 기존사업과의 차별성, 이행 가능성 등 추가 검토 필요

□ (심의안건) 평화경제 구현을 위한 남북 농업공동체 협력 방안(안) : 원안 의결 (可 25명, 쯔 1명, 기권 1명)

* 반대 표결(1명) 등을 감안, 차기 본회의에 재상정하여 심의 추진

○ (내용) 개발협력과 경제협력이 연계·종합화된 단지형 농업협력사업을 접경지 인근 농촌지역을 거점으로 집중 추진하여 협력단지의 자립 기반을 조성하는 방안 등 심의

○ 주요 의견

- 국내 농산물 수급 및 가격 영향을 감안, 계약재배 등을 통한 농산물 남한 반입은 신중한 접근 필요
- 수산업 관련 남북 경제협력사업 추진이 포함될 필요가 있으며, 이를 위해 ‘남북 수산업공동체 협력 방안’에 대한 기초연구 필요

-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평화농업협력단지 협력모델 구상과 함께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민간 차원의 교류 및 인도지원 우선적 이행 필요
- 평화농업협력단지 사업추진에 유리한 남측과 북측의 접경지역을 거점으로 공동의 농업협력사업을 종합적·선도적으로 추진 필요
- 남북관계 경색 지속 상황과 호전 상황의 두 개의 시나리오를 고려한 단계별 대안 마련이 필요하며, 상황 호전을 대비한 기반 준비 필요
- 국제적인 대북한 제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농자재 지원(비료, 농약, 종자, 농기계 등) 정책을 우선 추진하되, 이를 위해 남북한 TF 구성 제안

□ (심의안건) 산림의 공익가치 증진을 위한 경영구조 개선 방안(안) : 원안 의결 (可 26명, 쟁 없음, 기권 1명)

- (내용) 산주·임업인 지원을 통한 사유림경영 활성화,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국유림 경영, 산림복지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방안 등 심의·의결
- 주요 의견
 - 산림의 경우 별도의 자경의무가 없는 상황에서 경영 관련 규제를 완화할 경우 부동산 투기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, 산림 소유자의 의무 기준을 권고 기준으로 완화하는 부분은 신중한 검토 필요
 - 그린에너지 사업으로 산림을 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임토 개선사업이 선행되는 것이 중요
 - 국유림 관리의 다양한 참여 방안 모색을 위해 지정관리자 제도 및 산림형 NPO 육성 지원 정책 필요
 - 목재 생산만을 위한 정책에서 목재 생산과 병행한 정책이 필요하며, 법령 제정을 통해 환경 훼손 및 재해 발생 방지를 조건으로 한 임업인의 수익성 사업 승인 필요

□ (심의안건)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연근해어업 혁신 방안(안) : 원안 의결 (可 25명, 쟁 없음, 기권 2명)

- (내용) 선제적 어선 감척 추진, 어선 스마트화 및 신조 지원, 연근해어업 혁신기금 신설, 연근해어업의 조업구역 구분 등 보고·논의

○ 주요 의견

- 감척 사업의 폐업지원금 상향 등이 필요하며, 연근해혁신기금 조성을 위한 어업인 분담금 부과 및 연안·근해어선의 조업구역 구분에 대해서는 의견수렴 등을 통한 점진적 개선 필요
-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은 어획 강도가 높은 업종을 대상으로 우선 감척해야 하며, 연안어선 현대화 및 스마트화 사업은 톤수 및 업종별에 대하여 세부적인 검토 필요
- 어선 스마트화 및 신조 지원 확대는 선원 감축 시 실직 선원에 대한 구제 방안 고민 필요
- 감척사업 제도개선 방안 등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연근해어업 혁신기금 신설과 이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 선행 필요

□ (심의안건) 농업·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선택형 직불 확대 방안(안) : 원안 의결 (可 25명, 쟁 1명, 기권 1명)

- (내용) 현행 선택형 직불제의 현황 및 개선방안, 신규 선택형 직불제 제안 및 확대 방안 등 심의

○ 주요 의견

- 신규 선택형 직불제 프로그램은 농업인이 과도한 부담을 갖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과지표를 제시하되 계량적 결과보다는 실천 활동 과정으로 평가하는 것이 필요
- 직불제 이행점검을 위해 마을단위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농지관리 및 이행점검 추진 필요
- 선택형 직불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하나, 기본직불의 안정적인 정착 (자격 기준 개선, 상호준수 의무 이행 등)을 위한 선행 작업 필요
- 전체 직불예산, 선택형 직불 비중, 타 정책 프로그램(농업환경프로그램, 농민수당 등)과의 관계 등 포괄적 관점과 계획 속에서 치밀한 논의 필요

- 중점지역직불의 경우 중점지역의 정의, 지역선정방법, 관리프로그램과 보전프로그램의 구분 등 명확한 제도 설계 필요
- 공익형직불제의 개선방안으로 제시된 단가 인상 등에 대한 구체성이 부족하며, 신규 선택형 프로그램의 추진체계, 예산 등의 구체성 부족
- 중점지역 관리프로그램에서 이행준수의 체계적 관리와 참여자의 역량 제고, 모니터링형 일자리 연계 등의 방안 제시 필요
- 동 안건은 사안이 민감하고, 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관계부처 간 지속 협의 필요

□ (심의안건) 임업·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 도입 : 원안 의결 (可 25명, 저 1명, 기권 1명)

- (내용) 임산물생산업, 육림업 등에 대한 직접지불금 지급, 산림의 공익기능 강화를 위한 의무준수사항 및 이행점검 방안 등 심의·의결
- 주요 의견
 - 산림의 경우 별도 자경의무가 없는 만큼 직불금 부정·편법 수령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필요
 - 상수도 보호지역, 군사 보호지역, 국립공원 내 사유 산지에 대해서는 산주가 임의대로 산림경영을 할 수 없는 소유지이기 때문에,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직접 지불제에 포함 필요

□ (보고안건) 수산분야 공익형 직불제 확대 방안(안)

- (내용) 수산분야 공익형 직불제 도입 필요성, 기대효과, 수산물 생산·어업자원 관리·해양생태환경 관리 등 직불제 도입 유형 보고·논의
- 주요 의견
 - 수산분야 공익형 직불제 확대를 위해 전문적인 추가 연구와 안정적 예산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

- 수산자원보호 직불제는 사업대상 업종 확대 필요, 경영이양 직불제는 귀어업인의 거주환경 및 소득보전 마련 방안과 정책자금 지원 확대를 위한 연령 조정 등 추가 검토 필요
- 지급대상의 적합성,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, 부정수급 여부 등에 대한 관리 중요
- 수산분야 공익형 직불제 확대를 위해서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수산업·어촌의 공익가치와 상호준수 의무 발굴 필요

□ (보고안전) 국가 식량 계획(안)

- (내용) 국가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식량 자급기반 확대, 지속가능한 먹거리 생산·소비 기반 구축,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보장 등 보고·논의
- 주요 의견
 - 수산식품의 위생 및 안전 확보를 위해 수산물 위판장 저온시설 인프라 구축 및 보관·수송 물류시스템 지원사업의 규모 확대 필요
 - 환경 부하를 최소화하기 위해 음식물류 손실·폐기 감축은 중요하며, 이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확산을 위한 교육·홍보 프로그램 마련 필요
 - 소비자기한 도입 관련, 소비자 혼란이 없도록 교육·홍보를 통한 인식 전환 유도 필요
 - 먹거리의 지속가능한 선순환체계 구축에서 수입 부분과 음식물 폐기 부분에 대한 내용이 불충분하므로 보완 필요
 - 탈탄소·생태(유기) 농어업의 정의를 명확화 하는 것이 필요하며, 탈탄소·생태 농어업 전환을 위한 단계별 로드맵 제시 중요
 - 식량안보를 위해 농지를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며, 이를 위해 농지의 투기화 방지, 간척지 활용 생산 등 필요

□ (보고안전) '20년 농정대전환 전국순회 원탁회의 추진 결과

- (내용)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(안) 및 농어업·농어촌 뉴딜 과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추진한 전국순회 원탁회의 결과 보고·논의
- 주요 의견
 - 코로나 여파로 어려움이 있겠으나 앞으로도 농특위 활동에 대한 홍보와 현장 의견수렴을 위한 논의의 장 지속적으로 마련
 - 2021년 원탁회의 개최 계획의 결정 여부, 사유, 내용 등 추진계획에 대한 구체적 논의 선행 필요

□ 추가 사항

- 단순 검토의견에 대한 반영 여부(필요시 수정 의결)를 위원장에게 위임 : 원안 의결 (可 26명, 쟁 없음, 기권 1명)
- 쟁점사항이 많은 안전에 대해서는 과반수 동의를 받았더라도 다음 본위원회에 재상정할 수 있는 권한을 위원장에게 위임 : 원안 의결 (可 26명, 쟁 없음, 기권 1명)

3. 향후 계획

- 심의 안전(6건)은 표결에 따라 원안 의결하되, 제기 의견은 향후 세부 이행계획 수립시 관계부처 등과 협의·검토
- 보고 안전(3건)은 서면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·보완 추진